

1983年6月15日 制定施行  
1985年7月22日 改正施行  
1986年9月30日 改正施行  
1989年1月26日 改正施行  
1992年1月29日 改正施行  
1992年7月21日 改正施行  
1992年7月25日 改正施行  
1998年7月28日 改正施行  
2001年7月31日 改正施行  
2002年10月25日 改正施行  
2004年4月23日 改正施行  
2004年7月29日 改正施行  
2004年10月19日 改正施行  
2007年3月8日 改正施行  
2007年8月7日 改正施行  
2010年8月24日 改正施行  
2013年8月30日 改正施行

# 選舉規定

仁川廣域市個人택시運送事業組合

#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명 칭)

제 2 장 위 원 회

제 3 조 (위원회)

제 4 조 (위원회의 직무)

제 5 조 (위원의 임기)

제 6 조 (위원의 홍보 범위)

제 3 장 선 거

(제 1 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7 조 (선거권)

제 8 조 (피선거권)

제 9 조 (피선거권의 없는 자)

(제 2 절 선거구역과 대의원회 정수)

제 10 조 (선거구)

제 11 조 (대의원회 정수)

(제 3 절 선거인 명부)

제 12 조 (명부 작성)

제 13 조 (명부 열람)

제 14 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 4 절 후보자)

제 15 조 (후보등록)

제 16 조 (이중등록의 금지)

제 17 조 (등록무효)

(제 5 절 선거의 방법)

제 18 조 (선거)

제 19 조 (이사, 대의원 선거)

제 20 조 (감사선출)

(제 6 절 선거운동)

제 21 조 (선거운동의 기간)

제 22 조 (선거운동의 범위)

제 23 조 (선거운동의 금지)

제 24 조 (선거공보의 발행)

제 25 조 (합동 연설회)

제 26 조 (합동 연설회의 연설 순위)

제 27 조 (기부행위의 제한)

제 28 조 (선거 비용)

(제 7 절 선거 일과 투표)

제 29 조 (선거일)

제 30 조 (투표 방법)

제 31 조 (투표소의 설치)

제 32 조 (투표 시간)

제 33 조 (투표 용지)

제 34 조 (투표함의 제작)

제 35 조 (투표용지의 수령)

제 36 조 (투표의 제한 및 기표 절차)

제 37 조 (투표 참관)

제 38 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제 39 조 (투표함의 봉쇄)

(제 8 절 개 표)

제 40 조 (개표관리)

제 41 조 (개표소의 출입 제한과 질서유지)

제 42 조 (투표함의 개함)

제 43 조 (무효투표)

제 44 조 (유효투표)

제 45 조 (투표지 구분)

제 46 조 (투표지, 선거록들의 보관)

(제 9 절 당 선 인)

제 47 조 (당선인의 결정)

제 48 조 (당선인 통지)

제 49 조 (당선 무효)

제 50 조 (당선 유·무효에 대한 이의신청)

제 4 장 부 칙

제 51 조 (벌 칙)

제 50 조 (시행일)

# 선거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12 조 및 제 18 조에 의거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을 조합원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하여 본 조합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명 칭)

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 제 2 장 위 원 회

### 제 3 조 (위 원 회)

1. 본 위원회는 제 1 조(목적)의 규정에 의거 조합의 선거를 관장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은 9 명으로 하고 3 명의 예비 위원을 둔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호선된 위원장은 선거 공고일에 위원 명단을 공고 하여야 한다. 위원장 결원 시 위원회에서 재 호선 한다.
4. 위원은 이사장이 3 명을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3 명, 대의원회에서 3 명을 선출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의 결원시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3 명의 예비위원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5. 정관 제 13 조(임원의 자격)을 갖춘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 **제 4 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독립적이며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선거인 명부 작성.
2. 선거 관련 각종 공고.
3. 후보자 등록 서류의 심사, 접수 및 등록 무효 결정.
4. 선거 공보물의 발송 및 합동 연설회의 운영 관리.
5. 선거 투·개표 관리 및 선거록의 작성
6. 당선인의 결정.
7. 선거 결과 공표 및 당선 통지서 교부.
8.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서 접수 및 심사, 결정.
9. 각 투표서의 투표관리 위원 및 선거 종사자, 질서유지 요원의 지휘 감독.
10.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의에서 심의안을 상정하여 차기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11. 기타 선거에 관한 중요사항.

#### **제 5 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정기임원 선거완료 후 이사장 및 임원 법인 등기 완료시 까지 한다.
2. 대의원 및 이사는 위원직을 겸임 할 수 없다.
3. 위원회 구성 후 위원의 결원 시 예비위원이 위원직을 자동 승계 한다.

4. 위원회는 투표일 60 일전에 구성 한다.
5.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당해 연도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

### **제 6 조 (위원의 홍보 범위)**

1. 위원회는 이사장, 대의원 입후보자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구별로 후보자 경력,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을 칼라로 제작하여 일괄 발송한다.

단, 대의원은 공약사항이 없으며 위원회에서 이사장, 대의원 후보자를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 및 대의원 후보자의 홍보물을 가정으로 배포된 내용과 같이 기재하여 충전소 및 게시판, 식당에 각 구별로 경력, 사진, 기호를 첨부 칼라로 벽보를 작성, 조합원에게 홍보한다.

단, 이사장 후보자는 공약사항을 첨부 할 수 있다.

## **제 3 장 선 거**

### **제 1 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 7 조 (선거권)**

선거권은 선거 공고 5 일전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고 본 조합에 가입한자로 한다.

#### **제 8 조 (피선거권)**

임원 및 대의원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의 피선거권은 본 규정 제 7 조의 선거권을 취득한지

만 7 년이 경과한 자라야 한다.

2. 대의원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본 규정 제 7 조의 선거권을 취득한지 만 5 년이 경과한 자라야한다.

3. 대의원 출마자는 선거공고일 이전 90 일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한다.

### **제 9 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1. 선거 공고 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조합 정관이 정한 공과금을 계속해서 4 개월 분 이상 연체한 자.

2. 대의원회에서 임원 및 조합원 중 불신임 권고를 받고 만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조합의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영리 목적의 이득을 취 하는자.

4.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5 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마약,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쳐 50 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종료일로 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민, 형사상 진정, 고소, 고발소송 등으로 하여 조합 및 조합원이 무죄 또는 무혐의로 확정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힌 자로 확정일로부터 3 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제 2 절 선거구역과 대의원 정수**

### **제 10 조 (선거구)**

대의원 선거구역은 본 시의 구청별로 구역을 정하되 구역별 조합원이 250 인 이하일 때에는 인접된 구역에 편입하여 선거구로 정한다. 단, 강화군은 예외.

### **제 11 조 (대의원회 정수)**

정관 제 14 조에 의거 대의원회의 정수는 36 명 중 이사 10 명 이내로 하며 (강화 대의원

1 명 포함)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수로 250 명으로 나눈 인원 당 1 명씩으로 하여 선거구역별로 배분하여 선출한다.(강화군은 예외)

## **제 3 절 선거인 명부**

### **제 12 조 (명부작성)**

1. 선거인 명부는 각 구별로 작성한다.
2. 선거인 명부 작성은 본 규정 제 7 조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 **제 13 조 (명부열람)**

1. 본 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 일간 본 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에 이중으로 등록 할 수 없다.

### **제 14 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 명부는 선거인 명부 열람이 끝나는 다음날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단, 공고일 이후 주소 변경 자는 공고일 이전의 주소지에서 투표에 임하여야 한다.

## **제 4 절 후보자**

## **제 15 조 (후보등록)**

1. 이사장, 대의원 후보자는 본 규정 제 8 조의 자격과 제 9 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2. 선관위에 접수된 등록서류를 검토 후 미달된 서류는 3 일간 유예기간을 주고 교정 제출토록 한다.
3. 이사장 후보자는 공탁금 700 만원, 대의원 후보자는 10 만원을 본 조합 명의로 된 조합 거래 은행에 예치한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 3 항의 예치한 공탁금 중 선거비용을 제외한 잔여금은 조합자산으로 귀속 시킨다. 단, 접수된 공탁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 16 조 (이중등록의 금지)**

이사장, 대의원 후보등록자는 이중으로 등록 할 수 없다.

## **제 17 조 (등록무효)**

1.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후보자 등록 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등록을 무효로 한때는 공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3. 후보자 등록 후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선거 공보 상에 경력 및 학력등의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4.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 무효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선거 공고 일로부터 아래 ①,②,③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선거를 목적으로 후보자 비방 및 찬조금을 줄 수 없다.

② 선거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방문,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 단, 애경사 제외 )

③ 선거를 목적으로 후보자는 각종 모임, 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후원회 행사를 할 수 없다.

## 제 5 절 선거의 방법

### 제 18 조 (선거)

이사장, 대의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 19 조 (이사, 대의원 선거)

1. 이사 선출은 대의원 36 명중에서 구역별 조합원 비례에 따라 간선제로 10 명을 선출한다. 단,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중에서 구역별 차순위 득표자가 자동 승계한다.

2. 대의원의 선거는 해당구역 선거권자 투표로 최고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3. 대의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지역별 차순위 득표자가 자동 승계한다.

### 제 20 조 (감사 선출)

감사는 선거에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 한다.

## 제 6 절 선거 운동

## **제 21 조 (선거운동의 기간)**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투표일 10 일 전부터 투표일 00 시까지로 한다.

## **제 22 조 (선거운동의 범위)**

1. 개인 홍보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후 일괄 제작 배부한 명함(10cm×6cm)에 한하여 이사장 후보자 본인 및 운영위원 5 명만 직접 배포 할수 있으며 명함에는 기호, 성명, 사진, 입후보직, 학력, 차량번호, 경력 이외의 기재 사항은 불가하고 특히 비방 문구는 절대 금지 한다.
2. 명함 이외의 개인 홍보물은 어떠한 유인물도 발송 및 배포를 금지 한다.
3. 이사장 후보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일괄 제작한 5 개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 하여 홍보 할 수 있다. (단, 후보 사무실 외벽 1 곳, 시내 4 곳)
4. 전화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가능 하나, E-mail 과 휴대전화 문자 발송은 금지한다.
5. 위원회에서 제작한 명함, 어깨띠,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는 가능하나 그 이외의 어떠한 홍보물도 제작 사용 할 수 없다.
6. 대의원 후보자는 이사장 후보자를 선거운동 할수 있다. 단, 22 조 2 항에 준한다.

## **제 23 조 (선거운동의 금지)**

1.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 행위는 투표일 30 일 전부터 일체 금한다.
  - ① 경쟁 입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②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③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사와 조합 직원의 선거관여 및 홍보행위.

④ 어깨띠, 사진 및 피켓을 사용하는 선거운동 행위.

단, 이사장 후보와 위원회에 등록된 운영위원 5 명외에는

어깨띠 착용을 금지 한다. 운영위원의 대리 및 교체 불가.

(어깨띠에는 사진, 기호, 성명 외 금지. 투표일전 10 일간만 허용)

⑤ 이사장 후보자에 한하여 1 개소에 선거 사무실을 개설 할 수 있으나 투표일 20 일 전까지는 금한다.

⑥ 선거당일 출마자 및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

⑦ 후보자 및 운영위원 5 명 이외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대의원 후보는 제외)

2. 전 제 1 항과 각 호의 1 개 이상의 위반사실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위반 사실을 시정토록 하고 2 번일 경우 경고, 3 회 이상일 경우 선관위의 결의로 입후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3. 전 제 1 항과 각 호 위반행위의 이의신청은 투표 전일 12 시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각 후보 및 조합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 할 수 없으며 폭언,

폭력, 등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 하였을 경우 후보자는 위 2 항에 준하여 제재를 할 수 있고 조합원은 상별규정에 의거 제재 한다.

## 제 24 조 (선거공보의 발행)

1. 위원회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연령, 주소, 입후보 공약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1 회 발송하여야 한다. 단, 입후보자 공약 사항은 3,000 자 이내로 한정한다. (이사장 후보에 한함)
2.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등을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일 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이력서, 최종학력과 주요경력 은 수료증 및 입증서류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시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최종학력 미제출시 학력은 없음으로 명시한다.
3. 선거공보의 규격,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4. 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권 자에게 선거 3 일전까지 도착 하도록 선거 공보를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5. 투표일 90 일전부터 조합 소식지 발행은 전면 금지한다.

#### **제 25 조 (합동연설회)**

1.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에 한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제 1 항의 합동연설회는 투표일 일주일 전부터 3 일간(3 회)실시하되, 후보자 1 인당 20 분 이내로 균등하게 배정한다.
3. 후보자는 합동연설회의 연설에서 특정인을 앞세우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 모함하는 연설을 할 수 없다.
4. 위원회는 제 3 항의 연설을 행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 그 제지에 불응할 때에는 1 차 경고, 2 차 연설중지, 3 차 후보자

자격 박탈, 등록 무효와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제 26 조 (합동 연설회의 연설 순위)**

합동 연설회의 연설 순위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연설자가 자기 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 27 조 (기부행위의 제한)**

1.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투표일 30 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선거구 선거권 자에게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 단, 경조사 제외)
2.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제 1 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후보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 17 조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 28 조 (선거비용)**

1. 이사장, 대의원 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후보자가 예치한 공탁금으로 사용한다.
2. 선거비용 부족분에 대하여는 조합예산 중 예비비에서 충당한다.
3.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감사는 조합 감사가 한다.

### **제 7 절 선거일과 투 표**

#### **제 29 조 (선 거 일)**

1. 이사장, 대의원의 선거일은 각 임기 만료일 30 일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이사장, 대의원의 선거운동 기간을 10 일로 하고, 선거 공고일은 투표일 20 일전에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0 조 (투표방법)**

투표는 기표 방법에 의한 투표로서 본인이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 **제 31 조 (투표소의 설치)**

1. 투표소는 조합에서 장소를 지정하여 설치하되 선거 3 일전까지 도착하도록 선거권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투표소의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투표소에는 투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합의 직원 중에서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 32 조 (투표시간)**

1. 투표는 투표일 오전 0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 후보자(이사장, 대의원)는 오전 중에 투표를 마치고 투표장소를 반경 1km 이상 떠나야 하며 적발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후보자를 당선 무효 또는 사퇴 시킨다. (제 23 조 2 항 적용)
2. 투표 개시 전 위원회는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 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시각까지 투표 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33 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한다.

2. 기호는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 다음날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1.2.3..... 순으로 표시한다.
3. 투표용지가 작성 완료된 후에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작성된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말소  
하지 아니한다.
4. 투표용지의 규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투표용지에는 위원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 34 조 (투표함의 제작)**

투표함은 위원회가 선거 당일까지 제작하여야 하며 규격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35 조 (투표용지의 수령)**

1.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 참관인의 참여 하에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위원회 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모인하고 투표용지 1 매를 받아야 한다.  
  
단, 후보자가 된 사람은 참관인이 될 수 없다.
2. 위원이 투표용지를 교부한때에는 그때마다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차내에 게시된 사진표는 인정한다.

#### **제 36 조 (투표의 제한 및 기표절차)**

1.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 할 수 없으며, 등재 되었다

하더라도 선거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2.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표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위원과 투표 참관인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3.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때라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4.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할 때에는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 **제 37 조 (투표참관)**

1. 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사장 후보자는 후보등록 신청 시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 참관인 6 명  
이내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 참관인 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투표 참관인은 투표 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  
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를 발견 시 위원회는 이를 시정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투표 참관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제 38 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1. 투표자, 투표 참관인, 위원회 위원 및 사무보조 직원 이외에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전 항에 해당하는 자는 직책 등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 **제 39 조 (투표함의 봉쇄)**

위원회는 투표소 종료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 참관인의 참여 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봉쇄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 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 8 절 개 표**

### **제 40 조 (개표관리)**

1. 개표사무는 위원회에서 이를 행하며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본 조합의 직원 중에서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 41 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1. 후보자, 개표 참관인(투표참관인 겸무)위원회의 위원과 사무보조 직원 이외는 출입 할 수 없다.
2. 전 항의 출입자가 개표소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직책 등을 표시한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

한 개표를 실시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질서문란 행위자를 퇴장시키고 실시 할 수 있다.

#### **제 42 조 (투표함의 개함)**

1. 투표함을 개함 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후보자 및 참관인에게 알리고 개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위원장은 개함 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교부된 투표 용지 수와 대조 하여야 한다.

#### **제 43 조 (무효투표)**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것.
5.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제 44 조 (유효투표)**

1. ○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 표 안이 메워져 있어도 위원회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기표란 선에 기표된 것이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기표한 것이 옳겨 묻은 것이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제 45 조 (투표지 구분)**

유효 투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 46 조 (투표지, 선거록들의 보관)**

위원회는 투표지, 선거록 등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한다.

### **제 9 절 당 선 인**

#### **제 47 조 (당선인의 결정)**

1. 위원회는 당해 선거구역의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자가 같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합 가입일자가 빠른 자를 당선자로 하며, 조합 가입일이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이사장, 대의원 후보자수가 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 한다.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위원장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제 48 조 (당선인 통지)**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선 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

통지를 하고 해당구역 조합원에게도 당선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 49 조 (당선무효)**

1.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2. 선거규정 제 23 조 1,2,4 항과 제 27 조 1 항에 위배되는 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당선 무효로 할 수 있다.

#### **제 50 조 (당선 유·무효에 대한 이의 신청)**

1. 후보자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당선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신청 5 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후보자의 이의 신청은 1 회에 한하여 5 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 **제 4 장 부 칙**

#### **제 51 조 (별 칙)**

1. 후보자, 조합원 또는 제삼자가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나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의하여 후보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2. 후보등록의 취소를 결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이 본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 운동 및 후보자 비방을 행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후 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며, 피선거권의 자격을  
만 5년 간 박탈한다.

4. 위원의 일비는 공탁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식대를 포함한 수당을  
2회 분할 지급 (투표 10일전 1회, 선거업무 종료 시 1회) 한다.

①위원장 250만원 ②간사 230만원 ③위원 210만원

단, 위원회는 위원 임명 후 선거업무 종료 시 까지로 하고 기타  
어떠한 명목의 수당도 지급 할 수 없다.

결근 시에는 일일 계산하여 삭감 지급 한다.

5. 위원회는 선거 업무 종료 시 선거 관련 모든 비품과 회계, 경리장부 및 통장,  
도장 등을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고의 파손 시는 위원 회의 공동  
책임으로 변상 하여야 한다.

6. 위원은 각 후보자로부터 일체의 금품,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피선거권을 3년간 박탈한다.

7. 본 규정에 없는 조항은 조합 관례에 따른다.

## **제 52 조 (시 행 일)**

1. 본 규정은 대의원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3년 6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85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86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1989년 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1992년 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1992년 7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1995년 7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1998년 7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01년 7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02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04년 4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04년 7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04년 10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07년 3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본 규정은 2007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7. 본 규정은 2010년 8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8. 본 규정은 2013년 8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